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구미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을 위한 사무 위탁(안 제6조)
- 자문기관 변경(안 제7조)
-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등(안 제9조~제16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3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합 의: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 추진위원회’로 자문기관 변경 및 심의기능 추가, 그에 따른 추진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반영 및 위탁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 검토 결과,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지원) (생략) <u><신설></u>	제6조(사업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개정안 제6조는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무장애 도시 조성 관련 조사, 연구, 세미나, 교육, 홍보 사업 등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7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사회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건설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종합허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1.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회복지·도시계획·건축·토목·조경·교통·정보통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동 약자 및 의사소통 약자 3. 그 밖에 유관 기관 및 단체의 대표, 실무자 등 무장애 생활환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심의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무장애 도시 조성의 주요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무장애 시설 인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4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전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7조(자문) ① 시장은 제6조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자문) ① 시장은 제6조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 추진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 및 심의를 ----- ----- ----- -----.

- 개정안 제7조 및 제9조에서 제16조는 자문기관 변경 및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 추진위원회’로 자문기관 변경 및 심의기능 추가와 그에 따른 추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그리고 개정안 제14조 조제목을 내용변경에 따라 “자문”에서 “자문 및 심의”로 변경할 필요 있음.

○ 종합 검토 결과,

- 2024년 2월 기준 구미시의 이동약자(등록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아)는 약 73,613명으로 구미시 인구의 18%에 달함. 관내 편의 시설이 법적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이동약자가 시설물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함이 존재함.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여 모두가 살기 좋은 구미시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집행기관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실무 전문가, 이동약자 등을 위촉하여 위원회에서 이동약자가 실제로 겪는 불편함과 현실적인 해결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